

# 예 산 총 칙

2013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13,691,759	9,410,753
일반회계	264,891,202	7,946,736
특별회계	48,800,557	1,464,017
공기업특별회계	17,446,609	523,39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446,609	523,398
기타특별회계	31,353,948	940,618
주택사업특별회계	39,497	1,185
의료보호특별회계	647,338	19,42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912,890	57,387
장학사업특별회계	6,980,895	209,42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01,000	6,03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053,280	61,598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969,402	29,082
기반시설특별회계	45,653	1,370
수질개선특별회계	18,503,993	555,12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해 당 없 음"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사고이월사업] "해 당 없 음"

제 6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7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71,725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946,736천원으로 한다.

제 9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위 비목 상호 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